

【별표 1】

관내 민원다발지역

※ : 특별관리지역, 보도위 : 보도상 불법주차 성행지역

연번	동명	도로명	위치(구간)	구간 거리(m)	취약 시간대	도로 및 주변여건	비고
1	성북동	성북로	하모니마트 주변	140m	전일	마트앞 넓은보도 주차	보도위
2	삼선동	삼선교로 4길	한성대후문~노인정	150m	오후~저녁	양방향 주차시 통행불편	
3	삼선동	삼선교로	한성대입구역 ~ 성북세무서 사거리	380m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통행량 많은 구간	
4	동선동	보문로 34길	성신여대 정문앞	120m	오후~저녁	상가밀집된 일방통행 길, 마을버스 통행로	고정형 cctv 有
5	동선동 4가	야랑로 4길	안경이야기 초입	150m	전일	일방통행로, 낮고좁은보도	보도위
6	동선동	동소문로 24길	태극당 ~코아루센타시아 입구	105m	전일	상가밀집, 주상복합진입로	
7	동선동	동소문로 25가길	시각장애인 복지관 앞	140m	오전~오후	시각장애인 복지관 앞 주변 보도	보도위
8	동소문동 5가	동소문로 20길	성신여대입구역 ~돈암천주교 사거리	200m	전일	버스통행길, 상가밀집지역	
9	동소문동 7가	야랑로 5길	브라운스톤(아) 앞 2차선 도로	150m	오후~저녁	아파트 입구주변 상가밀집	
10	동소문동 5가	보문로 38길, 40길, 동소문로	동일하이빌 주상복합 주변길	350m	오후~저녁	돈암제일시장 및 상가주변	
11	돈암1동	정릉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 주변	120m	오후~저녁	학원차량	
12	돈암2동	성북로 4길	한신아파트 113동 옆 마 을버스 정류장	60m	저녁~익일 아침	주민차량 주차로 마 을버스 통행불가	
13	안암동	인촌로 24길	안암오거리~안암역	400m	오후~저녁	버스통행, 일방통행길	보도위 고정형 cctv 有
14	안암동	보문로 30가길, 인촌로 17가길	삼성래미안(아) 진입로	300m	오후~저녁	좁은 보도위 주차	보도위
15	보문동	지봉로	보문역~동망봉터널	150m	오전~오후	자동차정비소 및 가게	
16	보문동	인촌로6길	보문하우스토리	100m	아침, 저녁	주상복합 진입로 주차	
17	정릉1동	서경로	서경로41 미화약국	30m	출퇴근시간	길음뉴타운8단지 태영 아파트 진입삼거리	

18	정릉1동	서경로 11길	하모니마트	30m	10사~20시	마트주변 버스정류장	
19	정릉2동	보국문로	세계로마트~ 정릉시장입구	200m	10사~20시	대형슈퍼 주변	고정형 cctv 有
20	정릉3동	솔샘로	솔밭건재 앞	50m	전일	솔밭건재 건축자재 상하차 작업	보도위
21	정릉4동	솔샘로	솔샘터널	양쪽터널 입구에서 50m	야간시간	정릉풍림아이원(아) 주변	
22	길음1동	정릉로	길음역 2번출구	100m	12사~24시	길음역 수변공원	고정형 cctv 有
23	길음1동	길음로	길음1동주민센터	150m	전일	길음타운 5,7인치 사이, 상가밀집	
24	길음1동	길음로	구 길음1동주민센터 앞	20m	전일	길음시장 주변	보도위
25	길음2동	송인로 63	영훈초등학교 주변 럭키마트	200m	11사~18시	송인시장 인접	
26	길음2동	동소문로 47길	현대화점 및 책방원 주변	250m	전일	대형화점 및 병원주변	
27	길음2동	삼양로 20	대한적십자사 동대문 성북봉사관	20m	전일	병원주변	보도위
28	종암동	종암로 23길	래미안 세바티(아) 주변	300m	전일	상가밀집, 어린이보호구역	
29	종암동	종암로 21길	종암1차 아파트(아) 정문 건너편	100m	저녁	아파트 담벼락 및 건 너편 마트 앞 주차로 통행불편	
30	월곡2동	장월로 1길	동아(아) 상가	280m	오전	마을버스통행, 어린이보호구역	
31	월곡2동	화랑로 13길,57 오패산로 4길	동덕여대 진입로 (진각종 주변)	410m	저녁	마을버스통행, 일방통행로, 보도위 주차 성행(오패산로4길)	보도위
32	월곡1동	오패산로	월곡동 두산(아) 상가	250m	오전	하나로마트 납품차량	고정형 cctv 有
33	장위 1,3동	돌곶이로	북서울 꿈의 숲(동문)	260m	저녁	기사식당 등 유흥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고정형 cctv 有
34	장위2동	돌곶이로 27길	장위시장 주변	450m	전일	장위시장주변, 마을버 스 통행길, 상가밀집	보도위
35	석관동	한천로	주류창고	80m	오전~오후	2차선→3차선으로 도로 넓어짐	
36	석관동	한천로 58길	레포트타운	90m	7시~9시	석계초교옆 레포트타 운 이용차량	
37	석관동	화랑로 38길	석관초교 후문	100m	전일	일방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별표2】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지역

□ 설치현황 (서울시 10개소, 성북구 32개소)

번호	도로명/동명	주 소	설치장소	설치년도	비고
1	동소문로	동소문로 116	국민은행 돈암동지점 앞	2004년	서울시
2	미아로	동소문로 237-1	국민은행 길음동지점 앞	2004년	서울시
3	미아로	동소문로 300	경륜길음운영본부	2006년	서울시
4	도봉로	도봉로 27	구 신세계백화점 앞	2006년	서울시
5	정릉길	정릉로 328	현책 문화서점 앞	2008. 09	서울시
6	종암로	종암로 87	성북제일의원 앞	2008. 12	서울시
7	회기로	회기로 11	안암동 손칼국수집 앞	2008. 12	서울시
8	월계로	월계로 124	한마음유치원주변	2010. 01	서울시
9	월계로	월계로 164	삼성음악아카데미주변	2010. 01	서울시
10	종암로	종암로 64	종암우체국앞	2010. 01	서울시
11	성북동	혜화로 84-2	우리밀국시건너편	2009. 08	성북구
12	동소문동	동소문로17길 40	에덴어린이집앞	2009. 08	성북구
13	안암동	인촌로24길 25	타기온앞	2009. 08	성북구
14	안암동	개운사길 36	중앙학원건너편	2009. 08	성북구
15	보문동	보문로 136	코아루모텔하우스앞	2009. 08	성북구
16	정릉동	북악산로 852-1	대림상가건너편	2009. 10	성북구
17	정릉동	아리랑로 127	국민은행앞	2009. 09	성북구
18	정릉동	서경로 84	서경대, 대일외고 공터앞	2009. 09	성북구
19	정릉동	보국문로 37	신한은행앞	2009. 08	성북구
20	길음동	길음로7길 13	김법천국건너편	2009. 08	성북구
21	하월곡동	동소문로42길 5-1	경륜·경정길음지점 앞	2009. 08	성북구
22	하월곡동	오패산로 45	농협앞	2009. 08	성북구
23	장위동	장월로 147	국민은행앞	2009. 08	성북구
24	석관동	돌곳이로 15	통돼지두루치기앞	2009. 08	성북구
25	하월곡동	오패산로3길 9	동신아파트앞	2010. 09	성북구
26	길음동	동소문로46길 22	뉴타운장례식장 뒤	2010. 09	성북구
27	정릉동	보국문로 16	초원갈비 앞	2010. 09	성북구
28	석관동	돌곳이로22길 49	온누리 약국 앞	2011. 09	성북구
29	장위동	돌곳이로 198	JS코스매틱 앞	2011. 09	성북구
30	장위동	장월로 86	국민은행 건너편	2011. 09	성북구
31	월곡동	월곡로 14길 266	루나밸리아파트 앞	2011. 09	성북구
32	길음동	정릉로 376 건너편	길음역 2번 출구 진입로	2011. 09	성북구
33	성북동	성북로 12	나폴레옹제과점 건너편	2011. 09	성북구
34	보문동	보문로 149	표구사 앞	2011. 09	성북구
35	하월곡동	화랑로 79	농협 앞	2012. 05	성북구
36	하월곡동	종암로 174 건너편	동일하이빌 뉴시티 앞	2012. 05	성북구
37	종암동	월곡로 74 건너편	일신초교 앞	2012. 05	성북구
38	길음동	동소문로 225-15 건너편	삼성래미안 912동 앞	2012. 05	성북구
39	길음동	길음로9길 50 912동 앞	길음성가어린이집 앞	2012. 05	성북구
40	동선동	보문로34번길 77	엔젤리너스커피 앞	2013. 09	성북구
41	장위동	장위로 58	새롬약국 앞	2013. 09	성북구
42	안암동	인촌로 82	정문약국 앞	2013. 09	성북구

【별표3】

의견진술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부서 협조공문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부서 협조공문,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관련부서 협조공문, 차량등록원부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참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협조 공문, 사실 입증서류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증명서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 확인서 등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 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거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부서 협조공문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영수증 사본, 견인내역서 등
○상기 경우 외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별표4】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변형 장애						○	
	뇌병변 장애		○	○	○				
	시각장애		○	○	○	○	○		
	청각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장애								
	신장장애			○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 장애		○	○					
	안면변형 장애								
장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장애		○						
	정신장애		○						
	발달장애(자폐증)		○	○					

※ ()는 중복장애의 경우

【별표5】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관련)

1. 응급환자의 정의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 부령이 정하는 자

2. 응급환자의 기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증 상	주 요 내 용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